

新외감법 도입 앞두고 회계업계-기업 엇갈린 시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 시간 등 벌써 부작용

시총 100위 중 23개사 감사인 변경
감사비 폭등·높아진 리스크 이중고

오는 11월부터 세계 최초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한국에서 시작한다. 회계법인은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감사 계약을 맺는 만큼 '표준감사시간제' 도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회계 개혁의 시작점인 '신(新)외감법'의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의 반발이 만만찮다. 신외감법 도입이 기업에겐 상당한 회계 부담이 불가피해서다. 일부 회계법인의 '갑질'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회계 개혁은 시작됐지만 회계업계와 기업 간의 견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총 220개 기업의 감사인이 바뀔 전망이다.

◆감사인 지정제 11월 시행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회사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6년 자율선임 후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식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23개사의 감사인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인을 교체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실시한 감리결과가 무형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종인 경우와 기존 감사계약(19.11월 이전 체결)이 미종료된 경우 지정이 연기

자유선임

← 6년(사업연도) →

주기적 지정

← 3년(사업연도) →

통보시기 2019년 11월에 2020년 지정감사인을 통지(10월 사전통지)

회사업무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후 9월 둘째주까지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자료/금융감독원

이처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파트너십' 형태도 견고하게 다져진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관계를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관계로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감사인에게 기업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다.

감사인 지정제의 시행으로 '표준감사시간제' 적용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이 새로운 기업과 감사계약을 맺으면서 표준감사시간에 맞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서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적절한 감사시간을 규격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비교해서 감사시간이 20~4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충분한 감사가 이뤄져야 감사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도입의 취지다.

◆신외감법 도입에 기업들 '한숨'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기업들의 속앓

이도 상당하다. 기업들은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회계 부담이 과중하고, 급진적으로 이뤄져 속도를 맞추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특히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다양한 업종의 코스닥 기업을 업종별 11개 그룹으로만 나눈 표준감사시간제의 실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따라 감사비가 네 배 가까이 오른 기업도 나왔다. 감사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감사비용 증가다. 기업은 높아진 감사 리스크와 급등한 감사비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제를



지난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최중경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업데이트 하는 등 계속해서 기업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시간 상승을 제한을 걸고,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적용 대상에서 빼는 등 많은 후퇴가 있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른바 '회계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인이 '을'의 위치에 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켰으나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없거나, 제출을 거부할 때 감사인의 권한으로 컴퓨터 등 모든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경우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게될 뿐만 아니라 감사비는 2배에서 4배까지

급등한다.

◆곳곳에서 부작용 속출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일부 감사인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운다던가 퇴직자의 핸드폰까지 압수하는 등 오남용이 발생했다"며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감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는 것도 문제다.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작성 전 기업과 합당한 커뮤니케이션도 피하는 것이다.

한 IR담당자는 "주총에 임박해서야 우리 회사의 감사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다"면서 "충분히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회계 개혁의 강도가 강화될수록 기업과 감사인의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이지만 매년 자산규모 순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 결국 모든 상장사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표준감사시간제 역시 올해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2021년에는 자산 200억원 이상 상장사들도 일부 적용대상이 될 정도로 범위가 넓어진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구속 면한 조현아, '경영복귀' 빨라지나

집행유예 2년·벌금 480만원 선고
남은 재판 진행... 당장은 어려울 듯



선고공판 마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명품 밀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면서 그의 경영복귀가 가시권에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흘 전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 갑질' 사건 14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뒤여서 이런 관측이 더 힘을 받는 모양새다.

아직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해 재판 결과가 그의 경영복귀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국적기를 이용

조현민 전 전무가 이달 10일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깜짝 복귀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도 시간문제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아직 두 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이날 인천지법의 집행유예 판결로 그의 경영복귀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애물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는 임원 자격으로 위법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경영복귀를 원한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복귀한다면 지난해 한 달간 사장으로 복귀했던 호텔 사업을 맡으려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최중우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도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상장주관사 부실실사 과징금 확대할 것

▶▶ 1면 '사후적발-사전예방...'서 계속

금융위 "現 20억원... 대폭 올릴 것"

금융위는 상장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대폭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IPO 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내역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IPO 기업 중 자산이 1조원 이상이거나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감원이 직접 재무제표 심사에 나선다.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진해서 정정할 경우 제재 등 부담은

줄여준다.

당국이 재무제표를 심사한 결과 회계기준 위반동기가 '과실'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리를 거쳐 제재는 하지만 자진 정정임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 정정 유추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이전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i@

국내 펀드 순자산 607.5조... "채권형 견인"

지난 4월 전체 펀드 순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달에도 순자산 규모 증가세는 이어졌다.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채권형 펀드 수탁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13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5월 국내 펀드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순자산 규모는 607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0.3%) 증가했다. 설정액은 604조7000억원으로 7조원(1.2%) 늘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 추세가 지속되고

평가액도 급감했다"며 "반면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인 외국인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채권형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펀드 유형별로 보면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채권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전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117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6500억원(3.2%) 늘었다. /손엄지 기자